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제1장 총 칙

- 제1조 식품유통허가행위의 규범화와 <식품유통허가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행정허가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등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식품유통허가의 신청 수리, 심사비준 및 관련 감독검사 등의 행위는 본 방법에 의거한다.
- 제3조 유통단계에서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근거하여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자가 생산지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요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한 서비스제공자가 요식서비스 장소에서 자신들이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유통허가의 실시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업무는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직능기구에서 맡는다. 지방의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 관할업무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한다.
- 제5조 식품유통허가는 의법, 공개, 공평, 공정, 편리, 효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제6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등록관할권을 가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공상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와 영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이는 식품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식품경영자의 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경영의 요구에 부적합하게 되면,

* 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44호로 공포된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食品流通許可證管理辦法》를 번역, 정리하였음.

식품경영자는 즉시 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잠재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식품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소재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한다. 허가수속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일상 관리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경영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식품유통허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한다.

제8조 <식품유통허가증>의 심사, 발부 및 관리, 검사 과정 중에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기관은 적시에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청 및 수리

제9조 <식품유통허가증>을 신청할 시에는 식품안전표준과 더불어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경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상응하는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보관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이 장소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는 규정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경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상응하는 설비 혹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독, 탈의, 세수,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방진, 방충, 샤워 및 폐수,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안전 전문기술인력, 관리인력 및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정,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작업공정을 실현하고, 반가공식품과 직접 식용하는 식품,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이 유독성 물질, 불결한 물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식품유통허가증>의 취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유통허가신청서>

(2) <명칭사전비준통지서> 사본

(3) 식품경영에 상응하는 경영장소 사용증명

(4) 책임자 및 식품안전관리인력의 신분증명

(5) 식품경영에 상응하는 경영설비, 도구 명세서

(6) 식품경영에 상응하는 경영설비 공간배치 및 조작과정에 대한 문건

(7)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신청인이 타인에게 허가신청의 제출을 위임할 시, 대리인은 위임서 및 대리인 혹은 지정된 대표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가진 경영자가 경영활동 중 식품경영항목의 증가 신청을 원할 시에는 영업면허 등 주체자격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명칭우선 비준통지서>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식품경영기업이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이 기업의 투자자가 허가신청인이 된다. 주체자격을 획득한 기업이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기업이 허가신청인이 된다. 기업의 지사나 기구가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신청지점이 허가신청인이 된다. 개인이나 개체공상호가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업주가 허가신청인이 된다. 신청인은 신청서 등의 자료에 사인과 직인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식품유통허가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사실에 맞고 합법적이고 유효해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기업의 지점, 기구가 식품경영에 종사할 시에는 각 지점, 기구가 각각 <식품유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허가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2) 신청사항에 법에 따라 허가기관의 직권 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통지한다.

(3) 신청자료는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인은 수정한 곳에 날인이나 직인을 하고 수정일자를 표기한다.

(4) 신청자료가 다 갖추어지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을 시에는 현장에서, 혹은 5일 내에 한 번 신청인에게 보충 사항을 통지한다. 현장 통지 시에는 신청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5일 내에 통지할 시에는 수령한 신청자료 및 신청자료 수령증을 모두 반환한다.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자료의 수령날짜에 맞추어 즉시 수리한다.

(5) 신청자료가 모두 구비되고 법정 형식에도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부족한 자료를 모두 보충했을 시에는 허가기관이 이를 즉시 수리한다.

허가기관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허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청인은 서면으로 식품유통허가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요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가신청을 철회하면 허가기관은 수속을 중단한다.

제14조 허가기관이 신청인에게 신청결정을 수리할 때에는 <수리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시에는 <수리불가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인에게 신청행정 재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3장 심사 및 비준

제15조 식품유통허가사항은 경영장소, 책임자, 허가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식품유통허가사항 중 허가범위는 경영항목과 경영방식을 포함해야 하며, 경영항목에서는 예비포장식품, 개별포장식품 두 종류에 따라 검사하고 승인한다. 경영방식은 도매, 소매, 도소매 겸업 세 가지로 나누어 검사하고 승인한다.

제16조 허가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식품안전법> 제1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내용 및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법정 권한과 순서에 따라 경영장소에 대한 현장심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자료심의와 현장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제정한다.

현장심의를 진행할 시, 허가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집행인을 파견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과 식품경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장심의 시에는 <식품유통허가현장심의표>를 작성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유통허가신청서를 수리할 때, 허가기관은 수리일자로부터 20일 내에 허가결정 여부를 내려야 한다. 20일 내에 허가결정을 내리지 못할 시에는 허가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이유를 신

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허가기관이 허가결정을 내릴 때에는 <허가승인통지서>를 작성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하도록 한다. 허가결정 승인에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는 <허가승인변경통지서>을 작성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허가결정을 취소할 시에는 <허가통지서등기취통지서>를 작성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취소한다. 허가기관이 허가결정을 승인할 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허가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릴 시에는 <신청기각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19조 허가기관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전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진행한다.

제4장 허가의 변경과 취소

제20조 식품경영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원래 허가기관에게 식품유통허가 변경을 신청한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식품경영자가 허가기관에 식품유통허가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식품유통변경허가신청서>
- (2) <식품유통허가증>정본, 부분
- (3) 식품유통허가사항 관련 자료

제22조 식품유통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 만 30일 전에 원래 허가기간에 신청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변경하여 발급받는다.

연장수속을 거쳐 새로 발급된 <식품유통허가증>의 일련번호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발급년도와 유효기간은 갱신하여 적시한다.

제23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식품유통허가증>을 발행한 허가기관 혹은 상급행정기관

이 식품유통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허가기관 업무자의 직권남용, 업무태만으로 인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인에게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했을 경우

(2) 허가기관 업무인이 법정권한을 초월하여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했을 경우

(3) 허가기관 업무인이 법정과정을 위반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했을 경우

(4) 법에 의해 식품유통허가를 취소해야 할 기타 상황

식품경영자가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했을 경우에도 이를 철회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의한 식품유통허가 취소가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철회를 하지 않는다.

제24조 다음의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의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식품유통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식품경영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식품경영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주체 자격이 법에 의해 중지된 경우

(3) 식품유통허가가 법에 의해 철회되거나 <식품유통허가증>이 법에 의해 무효화될 경우

(4) 불가항력에 의해 식품유통허가사항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5) 법에 의해 <식품유통허가증>을 취소해야 할 기타 상황

제25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증>의 취소를 신청할 시에는 원래 허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유통취소허가신청서>

(2) <식품유통허가증> 정, 부분

(3) <식품유통허가증>의 취소와 관련된 증명 문건

허가기관은 취소 신청을 처리한 후, 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취소한다.

제26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유통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공개성명을 통해 이를 폐기하도록 하며, 원래 허가기관에 관련 증명을 제시하고 재발급 수속을 밟는다. 비준 후 20일 내에 원래 허가기관으로부터 <식품유통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장 허가증의 관리

- 제27조 <식품유통허가증>은 정본과 부분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는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식품유통허가증> 정본과 부분의 양식 및 <식품유통허가신청서>, <식품유통변경허가신청서>, <식품유통취소허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통일된 표본에 따른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유통허가증>과 관련 신청문서의 제작,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진다.
- 제28조 <식품유통허가증>은 이름, 경영장소, 허가범위, 주체유형, 책임자, 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증서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포함한다.
- 제29조 <식품유통허가증>의 번호는 2개의 알파벳과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SP+6자리 행정구역번호+2자리 발급년도+1자리 주체유형+6자리 일련번호+1자리 컴퓨터코드번호로 구성한다.
<식품유통허가증>의 구체적인 넘버링 규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 제30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위조, 수정, 전매, 대여, 대출할 수 없으며 기타 형식의 비합법적 양도 역시 불가하다. 식품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유통허가증> 정보를 전시해야 한다.

제6장 감독 심사

- 제31조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경영자에 대한 감독 심사를 진행한다. 감독 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경영자의 <식품유통허가증> 소지 여부
 - (2) 식품경영자의 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것이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시 경영자가 즉시 적절한 개정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소재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는지의 여부, 허가 재수속이 필요한 경우 경영자가 법에 상응하게 이를 처리하는지의 여부
 - (3) 식품유통허가사항에 변화가 발생했을 시, 경영자가 법에 근거하여 <식품유통

통허가증>의 변경허가 혹은 재신청수속을 진행하는지의 여부

(4) <식품유통허가증>의 위조, 수정, 전매, 대여, 대출 혹은 기타 형식의 비합법적 양도가 있는지의 여부

(5) 고용된 종업원이 신체건강증명 자료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6) 식품의 보관, 운수 및 판매 과정 중 식품의 질에 대한 보장과 오염 통제에 대한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2조 현금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경영자의 신용문서를 작성하여 허가 반포, 일상 감독심사결과, 위법행위 조사 등의 상황을 기록한다.

식품경영자가 종사하는 식품경영활동에 대해 감독심사를 진행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심사의 정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심사자와 식품경영자의 날인을 확인한 후 이를 문서로 보관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의 연 정기검사, 개체공상호의 영업면허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업 정기검사, 개체공상호 면허검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유통허가증>이 취소 혹은 무효화 된 것인지, 유효기간이 다 되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식품유통허가증>이 취소 혹은 무효화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범위의 변경 등록이나 취소등록의 수속을 책임진다.

제33조 허가신청인이 은폐, 혹은 날조된 자료를 통해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를 수리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식품유통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허가인에게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한 경우 신청인은 3년 이내에 식품유통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무효화된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은 직접적인 책임을 맡은 주관인은 처벌 결정 5일 내에 식품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력을 고용하였을 경우 원 증서발급 부문에 의해 허가증이 무효화된다.

제34조 다음의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정명령, 경고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1)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2) <식품유통허가증>을 위조, 수정, 전매, 대여, 대출하거나 기타 형식의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양도한 경우
- (3)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유통허가를 신청 혹은 취득한 경우
- (4) 사기, 뇌물수수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막거나 경감한 경우, 혹은 법에서 명시한 기타 정황의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위법 정도가 미약하거나 적시에 교정하여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제35조 식품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 식품경영자가 영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를 취소, 철회, 무효화 하거나, <식품유통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철회, 무효화 혹은 허가증 유효기간 기한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등록이나 철회 등록을 해야 한다.
- 제37조 공상행정관리기관 업무자가 근무태만, 직권남용, 사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의 행정책임을 묻는다. 이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 제38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문건을 작성해야 한다. 문건의 열람, 녹취, 휴대, 복제는 법률과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문서자료를 수정, 삭제, 표시, 훼손할 수 없다.
- 제3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식품안전종합협력부문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적시에 식품유통허가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부칙

- 제40조 식품경영자가 본 방법의 시행 전에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했을 경우, 이 허가증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원래 허가증의 허가사항에 변화가 생기거나 유효

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 식품경영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과 허가기간의 심의를 거친 후 <식품위생허가증>을 반납, 폐기하고 <식품유통허가증>을 수령한다. 또한, 관할 소재지의 원칙에 따라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 심사를 받는다.

<식품위생허가증>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감독심사를 실시한다.

제41조 식품유통허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본 행정기관의 예산에 삽입한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현지 실시 현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의 책임을 맡는다.

제44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